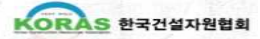


협 회 일 보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순환골재의 건설자원 개념 명확화 및 품질 관리기준 근거 등 마련
- ◇ 순환골재 품질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 사용 활성화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의 폐기물 속성을 제거하여 건설자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순환골재 관리기준 근거마련 등을 위해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21.5.3~5.17)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순환골재 속성 명확화 (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이 아닌 건설자원*으로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순환골재 관리기준 및 준수규정 등 마련 (안 제35조 및 제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처리업자의 순환골재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협회에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 순환골재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 개정법률(안)은 그간 대법원 및 환경부 등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가 해당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재활용된 것으로 보고 그 외에는 폐기물 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순환골재 관리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령(환경부령)에서 마련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환경부와 실무협의 추진 및 건설폐기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처리업계 현실에 맞는 관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개정법률(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오늘 5월 12일까지 협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279호’ 및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99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